

등록번호	정책기획담당관-4968
등록일자	2016.4.1.
결재일자	2016.4.4.
공개구분	비공개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정책기획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협 조		예산팀장 주무관			

---

**국민주택 특별공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

#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국민주택 특별공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이 일부 패소되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일부 포기하고 강제조정에 동의하는 등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자 함

## 1. 소송근거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 사건 및 판결개요

- 사건현황

사 건	2013가합503149 부당이득금	2013가합505015 부당이득금	2015나35120 부당이득금
원 고	조남표 외 114	신복순 외 24	최용복 외 2
피 고	서대문구 외 20	서대문구 외 12	서대문구 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이석형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이석형	법무법인 세정 변호사 박영운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결과	일부인용	일부인용	강제조정
판 결 일 (접 수 일)	2016.02.16. (2016.02.17.)	2016.02.16. (2016.02.17.)	2016.02.18. (2016.02.19.)
항소만료일	2016.03.02	2016.03.02	2016.03.04

## □ 사건개요

- 원고들과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에 의한 것으로 피고들은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음
- 이 사건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그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각자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이주한 해당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제기

## □ 판결내용

-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임

## 3. 소송(일부)종결 현황

### □ 우리구 소송(일부) 종결 현황

사 건	우리구 원고수	판결결과	인용금액
2013가합503149 (조남표외114)	2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하 : 3건</li> <li>■ 기각 : 6건</li> <li>■ 항소제기 : 5건</li> <li>■ 항소포기 : 9건</li> </ul>	144,626,860원 (9)
2013가합505015 (신복순외24)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각 : 2건</li> <li>■ 항소포기 : 3건</li> </ul>	48,052,026원 (3)
2015나35120 (최용복외2)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조정 : 2건</li> </ul>	18,000,000원 (2)

**항소포기 현황 및 사유**

사 건	원고번호	원고명	인용금액	사업부서	사유
2013가합 503149	42	서옥예	14,930,142	푸른도시과	▶ 구체적인 쟁점 사항으로 항소시 실익이 없으므로 항소 포기함 ▶ 또한 민사소송의 진행이 길어질수록 이자비용의 부담률이 높아짐
	44	황의동	14,913,062	자치행정과	
	50	최병석	17,779,967		
	51	정미선	17,809,469		
	55	김병희	17,809,469	토목과	
	57	표장봉	17,809,469		
	43	이상훈	14,877,971		
	47	강창오	10,887,842		
52	유숙자	17,809,469			
2013가합 505015	9	홍인숙	15,351,544	교통행정과	
	10	송한섭	14,942,563	토목과	
	13	이선기	17,757,919		

**강제조정 동의현황 및 사유**

사 건	원고번호	원고명	인용금액	사업부서	사유
2015나 35120	1	최용복	10,500,000	토목과	용지비의 재계산으로 인하여 강제조정인 인용금액이 2심 판결금액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됨
	2	백영일	7,500,000	푸른도시과	

## 4. 예비비 집행계획

**집행근거**

- 서울중앙지방법원(제10부) 판결문 2013가합503149 / 2013가합505015 부당이득금 배상금 지급
- 서울서부지방법원(제2부) 판결문 2015나35120 부당이득금 배상금 지급

**예비비 집행사유**

- 부당이득금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배상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고 지급지연시 추가이자 발생 및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긴급예산이 필요한 실정임
- 우리구 배상금 예산(정책기획담당관) 잔액이 부족하여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함

**소요예산**

- 총소요금액 : 금241,330,840원(금이역사천일백삼십삼만팔백사십원) ※기간이자 포함
  - 단수 금액에 대해서는 7원은 원고에게 지급, 3원은 우리구 계좌로 입금처리
- 지급대상 : 서옥예 외 13명
- 세부내역

사 건	원고번호	원 고	사업부서	판결금	이 자	합 계
2013가합 503149	42	서옥예	푸른도시과	14,930,142	2,378,193	17,308,335
	43	이상훈	토목과	14,877,971	2,369,883	17,247,854
	44	황의동	자치행정과	14,913,062	2,375,472	17,288,534
	47	강창오	토목과	10,887,842	1,734,303	12,622,145
	50	최병석	자치행정과	17,779,967	2,832,136	20,612,103
	51	정미선	자치행정과	17,809,469	2,836,836	20,646,305
	52	유숙자	토목과	17,809,469	2,836,836	20,646,305
	55	김병희	자치행정과	17,809,469	2,836,836	20,646,305
	57	표장봉	자치행정과	17,809,469	2,836,836	20,646,305
2013가합 505015	9	홍인숙	교통행정과	15,351,544	2,432,700	17,784,244
	10	송한섭	토목과	14,942,563	2,367,891	17,310,454
	13	이선기	토목과	17,757,919	2,814,029	20,571,948
2015나 35120	1	최용복	토목과	10,500,000	-	10,500,000
	2	백영일	푸른도시과	7,500,000	-	7,500,000
<b>총 계</b>				<b>210,678,886</b>	<b>30,651,951</b>	<b>241,330,837</b>

**집행방법**

- 정책기획담당관 배상금 예비비 확보 후 토목과에서 집행

- 붙임**
- 1) 소송결과 판결문(따로붙임) 각1부.
  - 2) 국민주택 특별공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종결보고 1부.
  - 3)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 4)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2013가합503149, 2013가합505015) 각1부. 끝.